

앙골라 (Angol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당연적용(근로자, 자영자)	당연적용(근로자, 자영자) 특별제도(소방관, 군인 등)	특정직종에 대한 특별제도 신설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3% / 11% / 8%	3% / 11% / 8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없음	없음 / 16,503 kwanzas	하한소득 기준신설
연금수급 개시연령	60세	60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180개월	180개월	-
노령연금 산정식 (40년 기준)	(퇴직 전 3년간 소득 × 480개월) ÷ 420	(퇴직 전 3년간 소득 × 480개월) ÷ 420	최대연금액 578,550 kwanzas
일시금	퇴직 전 1년간 소득의 30%	퇴직 전 1년간 소득의 30%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90년(사회보장), 2005년(장제비)
- 현행법 : 2004년(사회보호), 2005년(장제비),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), 2008년(노령연금, 자영자, 성직자), 2011년(장제비), 2016년(가사근로자), 2018년(보험료율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자, 특별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공공부문 근로자, 양자협정에 따른 외국인, 가사근로자 및 자영자
- 특별제도 : 소방관, 군인, 정보직, 경찰, 교정직원, 특정 전쟁 참전군인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월 소득의 3%

- 가사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의 3%(완전급여) 또는 2%(부분급여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소득은 농업 근로자 기준의 법정최저임금(월 16,503 kwanzas, 2019년 3월 이후는 21,454 kwanzas)
 - 보험료는 현금출산급여 및 가족수당의 재원이 됨(부분급여 납부를 선택한 가사근로자 제외)
- 자영자
- 월 신고소득의 11%(완전급여) 또는 8%(부분급여), 성직자의 경우 월 신고소득의 7%(노령 및 유족급여) 또는 5%(노령, 사망보조금 및 장제비)
 - 자영자는 완전급여 또는 부분급여 중 선택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소득은 농업 근로자 기준의 법정최저임금(월 16,503 kwanzas, 2019년 3월 이후는 21,454 kwanzas), 성직자의 경우 법정 월 최저 임금의 4배
 - 자영자의 완전급여 보험료는 현금출산급여 및 가족수당의 재원이 됨
- 사용자
- 월 임금지급액의 8%
 - 가사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지급액의 8%(완전급여) 또는 6%(부분급여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소득은 농업 근로자 기준의 법정최저임금(월 16,503 kwanzas, 2019년 3월 이후는 21,454 kwanzas)
 - 보험료는 현금출산급여 및 가족수당의 재원이 됨(부분급여 납부를 선택한 가사근로자 제외)
- 정부 : 없음. 사용자로서 납부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- 18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60세 도달자, 4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음
 - 여성의 경우 자녀 1명 당 1년씩 퇴직연령 하향조정(최대 5년)
 - 18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위험직종 종사자의 경우 10년 일찍 연금 수급 가능
 - 노령연금은 양자 협정에 따라 해외지급가능
 - 노령일시금 : 120개월 이상 180개월 미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상태인 60세 도달자
- 유족연금
- 영구유족연금
 - 사망자가 사망 전 5년 동안 3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유족 : 배우자, 사망자의 사망 당시 근로가 불가능한 50세 이상 부모, 근로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것으로 판정된 자녀
 - 배우자 재혼 시 연금 정지

- 일시유족연금
 - 사망자가 사망 전 5년 동안 3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영구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유족 : 무직의 배우자(연령제한 없음), 최저생계보조금을 받던 재혼하지 않은 전 배우자, 18세 이하 자녀(학생인 경우 25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
 - 배우자 재혼 시 연금 정지
- 사망일시금
 - 사망자가 3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한 경우 지급(성직자의 경우 36개월 납부 필요)
 - 수급가능유족 : 배우자 및 자녀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 및 최저생계 보조금을 받던 재혼하지 않은 전 배우자 또는 법적 후계자
- 장제비 : 사망 직전 12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(성직자의 경우 12개월 이상 납부)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
- 모든 유족연금, 사망보조금 및 장제비는 양자 협정에 따라 해외지급가능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 - 가입자의 최종 36개월 동안 월 평균소득(공무원의 경우 최종 12개월)에 보험료 납부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다시 420으로 나눈 금액 지급
 - 최저 연금월액 : 법정 최저 임금 (월 21,381 kwanzas, 2019년 3월 이후 33,598.13 kwanzas)
 - 최고 연금월액 : 578,550 kwanzas
 - 노령일시금 : 최종 12개월간의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0%
- 유족연금
 - 영구유족연금
 - 가입자의 최종 월 소득의 70%를 법률에 의해 결정된 비율로 수급가능 유족에게 분배
 - 최저 연금월액 : 농업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(월 16,503 kwanzas, 2019년 3월자로 21,454 kwanzas)
 - 일시유족연금
 - 가입자의 최종 월 소득의 70%를 법률에 의해 결정된 비율로 수급가능 유족에게 분배
 - 급여는 배우자에게는 1년 동안, 자녀에게는 18세 도달시까지 (학생의 경우 25세) 지급
 - 최저 연금월액 : 농업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(월 16,503 kwanzas, 2019년 3월자로 21,454 kwanzas)
 - 사망일시금
 - 사망자의 사망 당시 노령연금액 또는 최종 12개월 간 평균소득월액의 6배를 일시금으로 지급
 - 배우자와 자녀 간 균분 지급되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기타 수급권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
 - 장제비 : 일시금으로 25,000 kwanzas 지급

- 공공행정보동사회보장부(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, Labor and Social Security)
 - 전반적 감독
 - <http://www.maptss.gov.ao>

- 국가사회보장청(National Social Security Institute)
 - 제도의 관리·운영 및 보험료 징수
 - <http://www.inss.gov.ao>

<2019년 ISSA 자료>